

제2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

2017. 12. 6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 시 : 2017년 12월 6일

2. 장 소 : 금융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

최 종 구 위 원 장

송 준 상 위 원

이 성 호 위 원

윤 면 식 위 원

곽 범 국 위 원

정 순 섭 위 원

유 광 열 대리참석

4. 회의경과

가. 개회선언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개회를 선언함
(14시 00분 개회)

1) 2017년도 제20차 금융위 회의록과 2017년도 제21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

□ 2017년도 제20차 금융위 회의록과 2017년도 제21차 금융위 안전
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

2) 의결안건 심의

□ 의결안건 제296호 『「금융위원회 운영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』, 제297호 『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』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이번에 『금융위원회 운영규칙』과 『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』을 개정하는 것은 금융위원회·증권선물위원회 논의와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국민과 국회의

요구를 반영한 것임.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에 금융행정혁신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고, 오늘의 운영규칙 개정도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하겠음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지만,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각종 논의와 정책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. 다만, 개인 정보나 법률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그리고 주가 등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 할 수밖에 없을 텐데, 이 경우에도 기업의 명칭이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주요쟁점과 논의 방향을 최대한 의사록을 통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. 아무쪼록 이번 안건 공개와 의사록 상세 작성을 계기로 우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람.

□ 의결안건 제298호 『(주)마제스타(舊제이비어뮤즈먼트(주))의 사업 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3팀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299호 『(주)서희건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300호 『현대건설(주)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301호 『현대엔지니어링(주)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302호 『한화생명보험(주) 및 키움증권(주)의 (주)우리은행
주식취득 승인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
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3) 보고안건 심의

□ 보고안건 제57호 『2017년도 상반기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
현황 보고』 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
설명함

○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접수함

□ 보고안건 제58호 『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법률안』 , 제59호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』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
전자금융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이 차례로 내용을
설명함

- 법무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상통화 행위를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고, 정무위 주최의 국회 공청회에서도 이 법에 의해서 유사수신을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들이 있는데다, 범정부차원의 T/F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 개정안과 범정부 T/F와는 어떻게 관계되는지?
- 지난 9월 정부는 합동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. 엇그제 법무부 주관으로 앞으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추후 우리가 마련하는 안과 함께 협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.
- 종합대책과 법률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대책이 나온 후 법률안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?
-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우리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내용을 조율해서 병합하든지 아니면 단일안으로 진행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함
- 법률안 개정을 시작하더라도 한동안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T/F에서 추가적인 규율 방안이 나오면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게 될 것 같음
-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

⇒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60호 『2017년 상반기 지배구조법상 금융위원회 위탁 업무 처리결과 보고』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61호 『2016년 12월말 기준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보고』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17년도 금융위원회 제2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.
(14시 35분 폐회)